

[도표]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권원의 종류

1 -	행권원의 =	근거규정	참고사항
좋	확정된 종국	민사집행법 제24조	강제실현이 가능하고 허용되는 이행판결만 집행 권원이 됨.
	관결(終局判 決)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확정 증명과 집행문이 필요함.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1항).
민 사	가집행의 선고 가 있는 종국 판결(終局判 決)		가집행의 선고에 의하여 종국판결은 즉시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집행 할 수 있으나, 가집행선고는 상소심에서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변경되면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됨. 그러나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집행처분은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음.
집행법과	외 국 법 원 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음. 일반판결과 같이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이 가능함.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제165조 제1항).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소송상 화해 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이러한 조서도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이가능함.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2항).
	복할 수 있	민사집행법 제57조, 제 56조 제1호	①소송비용상환결정(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제2항)②소송비용액확정결정(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③피구조자의 소송승계인이나 피구조자에 대한 유예소송비용의 납입명령(민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131조)④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결정(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318조, 제326조, 제333조)⑤부동산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제3항(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문 없이집행가능)}⑥대체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⑦간접강제에 있어서 금전배상을 명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확정된 지급 명령	민사집행법 제57조, 제 56조 제3호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됨. ①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②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③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그 이외의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58조).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2항).



집	행권원의		N = N =1
 종	- 류	근거규정	참고사항
 민사집행법	집행증서	제57조, 제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공정증서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변호사법 제 49조제1항),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한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를 집행증서라 함.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줌(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소명시호는 의의 제기의 소명시호기가
과 민사소송법	가 압류 명 령, 가처분명령		멸시효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가압류 및 가처분명령은 그 자체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집행문의 부여를 요하지 않고즉시 집행할 수 있음. 다만,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함(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제301조).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
에 규 정 된	과태료의 재판 에 대한 검사 의 집행명령	민사집행법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집행법제60조),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 없음.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임(대법원2000. 8. 24.자 2000마1350 결정).
집 행 권 원	확정된 화해 권고결정	민사집행법 제57조, 제 56조 제5호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은 제226조 제1항의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31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이 가능함.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2항).



집	행권원의	근거규정	참고사항
	등 류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 정	중재법 제 37조 제2항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음(중재법 제37조 제2항) 일반판결과 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이 가능 함.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1항).
민사집행법과 민사	정정보도, 반 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판결	및 피해구 제 등에 관	정정보도청구의 소, 반론보도청구의 소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소는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간접 강제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론보도청구의 소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한 재판은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언론사에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수 있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소송법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	파 산 채 권 자 표, 회생채권 자표, 회생담 보권자표	에 관한 법	·확정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5조 제1항). 채권자는 파산종결 후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수 있음(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5조 제2항). ·채무자가 희생채권과 희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된 희생채권 또는 희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희생채권자표 또는 희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동일한 효력이 있음(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2조 제1항). 희생채권자 또는 희생담보권자는 희생절차종료 후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 대하여희생채권자표 또는 희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수 있음(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2조 제2항) ·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2항).



집행권원의		7 7 7 7	의 그 가 된
죻	- 류	근거규정	참고사항
민 사 집 행 법 과	회사회생절 차에 있어서 이사 등에 대한 출자이 행청구권 또 는 기한 돈 에 기한 손 해배상청구 권의 재판 정의 재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발기인·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감사·검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이의의 소가 기간(1월)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때에는 조사확정의 재판은 이행을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이의의 소가 제기되는경우에도 조사확정의 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한 판결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민사소송법이외의 법률에 -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	제29조, 민 사 조 정 법 제30조, 제 34조 제4항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결정을 하여야 하고(민사조정법 제30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없는 한 직권으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민사조정법 제32조), 이에 대하여 조서정본이 송달된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이 취하또는 각하 된 때에 위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이러한 화해조서와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이 가능함.
규 정 된 집 행 권 원	가사소송법에 의한 심판 및 조정 또는 조 정에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 법에 의한 이 행권고결정	제41조, 제 59조 제2항 소액사건심	가사소송에 있어서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고(가사소송법 제41조), 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이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함.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2항). 법원은 소액심판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이해한 것은 권고한 수 있고(소액사건시파법 제5조인3) 교
			10년임(민법 제165조 제2항).



집	행권원의	근거규정	참고사항
종	· 류	- 111 0	- , -
민 사 집 행	언론중재위원 회의 중재조정 조서와 중재조 서	제 등에 관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는 경우(피신청 언론사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및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 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다만, 당사자가 결정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 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이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함.
법과 민사소송법	비용의 수봉 (收捧)결정, 소 송구조 및 구	민사소송비 용법 제12 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1조,	법원이 당사자의 예난하지 아니하 비용을 지급하 때에는 제
이외의 법률에		비송사건절 차법 제249 조 비송사건절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하고, 이 경우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 없음.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임(대법원 2000. 8. 24.자 2000마1350 결정).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규 정 된 집 행 권 원	의 비용의 재 판 벌금, 과료, 몰 수, 추징, 과태 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	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77조	있음(비송사건절차법 제29조 제1항).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 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위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형사소송법 제 477조), 이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 없음.
72	이의신청에 대 한 토지수용위 원회의 재결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 상에관한법 률 제86조 제1항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6조 제1항). 재결확정증명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음.



1 -	행권원의	근거규정	참고사항
좋		L / 1 11 0	п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	특허권, 실용 신안권, 디자 인권, 상표권 의 심판, 항고 심판, 재심에 관하여 특허심 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 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신안법 제33 조, 디자인보 호법 제154 조, 상표법	
° 법	결정		
변이외의 법률에 규	유죄판결의 선 고와 동시에 하는 배상명령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61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음.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2항).
· 정된 집 행권원	정의 작대료결 정 소과지방	98조의5 제2 항, 제90조 제4호, 법무 사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과태료의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고, 검사의 지휘로 이를 집행한(변호사법 제98주의5 제2항 제90주 제4호) 법무사의 징계의